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6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3월 12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재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구성—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, 10~15인의 위원, 간사 1인
(위원장—부구청장, 부위원장—위원중 선출, 간사—기획예산과장)
-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
 - 우리구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
 - 지방채발행등,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검토 및 심의
- 위원회 개최—정기회의 10일이내,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
- 위원의 임기—2년
- 수당 지급—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(공무원 제외)

3. 제정 근거

지방재정법 제16조의 2

4. 조례(안) 별첨. (전문 10조, 부칙 1조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제 1 조(목 적)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(10~15인)을 둔다.
 1. 위 원 장—부구청장
 2. 부위원장—위원회에서 선출
 3. 위 원—지역주민(2~3인), 구의원(4~5인), 영등포구소속공무원중 국장급(5인)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예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보한다.
- ③ 위원중 구의원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거 선임한다.

제 3 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
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3.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5 조(위원회의 개최)

-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10일이내로 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6 조(안건의 배부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7 조(계획의 확정, 변경사항 보고)

- ① 위원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확정 결과를 매년 5월중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기타 주요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함으로써

보고에 가름한다.

제 8 조(위원회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제 9 조(위원의 수당지급) 위원회 개최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(기 타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